

대구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가합2089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23. 3. 28 선고 2021나2823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가합208943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호

담당변호사 성현호

피 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현

담당변호사 정진규

변론종결 2021. 10. 21.

판결선고 2021. 12. 9.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8. 9. 7.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①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② D 주식회사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8. 7. 3.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3,530,752,3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216,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8차전 89255호)을 받았는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8. 12. 20. 위 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60813호로 E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중 3,714,227,630원에 이르는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2)항 기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 2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3,714,227,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276,2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2. 28. 확정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

C는 2018. 9. 7. 피고에게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총 12,000주의 발행주식 중 1,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대금 5억 원에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일인 2018. 9. 7. 기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0,948,852,000원이다[피고는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기한 위 가치평가금액 10,948,852,0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대금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 소유의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그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469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 양수일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다.

2) 원고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전부 받은 E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전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동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일에 가까운 2018. 6. 30.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면 합계 105,036,652원의 적극재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295,152원 + 단기매매증권 50,000,000원 + 창업비 2,741,500원 + 임차보증금 50,000,000원)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주주·임원·직원에게 대한 단기차입금채무 3,748,046,830원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가 2018. 9. 7. 피고에게 시가 10,948,852,000원인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인 5억 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C로부터 시가 약 109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5억 원이라는 저가에 매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D에게 그와 같은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훈, 판사 황윤철, 판사 남명수

목 록

- 발행회사 : D 주식회사
- 1주의 금액 : 10,000원
- 발행주식의 총수 : 12,000주
-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 피고의 주식 수: 1,000주. 끝.

